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가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(개별주식 위클리옵션에 대한 경고·보류기준 설정)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(2026/6/11 개정·2026/6/2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개별 주식 위클리옵션이 신규 상장(한국거래소 2026.6.29.)됨에 따라 주문착오방지 관련 경고·보류기준 개정을 위함
 - 한국거래소 '2026년 상반기 파생상품시장 신상품 및 제도개선 사항' 중 신규 상장 상품
 - 매매주문 시 착오입력 방지를 위해 금액, 수량, 가격 등 특정 기준 초과시 팝업창을 통한 재확인(경고기준) 또는 책임자 승인(보류기준)을 거쳐 최종 주문 처리

2) 주요 내용

-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에 대한 경고·보류기준 설정(별표 1)
 - 주식옵션과 동일하게 주문금액 기준으로 경고기준(2억원 초과~5억원 이하), 보류기준(5억원 초과) 설정
 - 만기, 거래기간 등 일주일 단위로 거래되는 위클리 상품 특성을 제외하고 거래제도가 유사(거래승수, 행사가 격 설정, 호가가격단위 등 동일)(별첨 참조)
- '선물스프레드거래' 중 '유로스톡스50선물스프레드'에 대한 경고·보류기준 삭제(별표 1)
 -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야간거래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유럽파생상품거래소(Eurex) 연계방식 종료(2025.6.9.)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